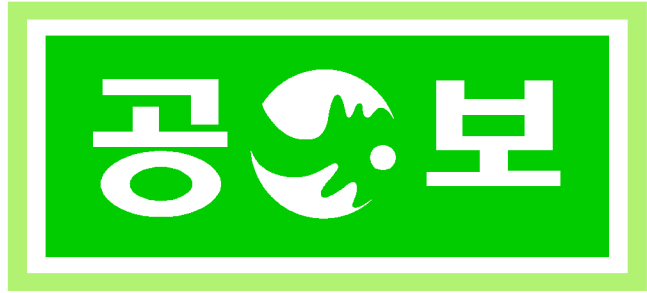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구 람	기 관 의 장

제 1033 호 2016. 10. 20. (목)

고 시

○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79호[도로명주소 고시]2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--------	---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기획홍보실(☎241-7125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6-179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10월 20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동대로 51-3(호계동)외 3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석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6. 10. 20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87-13	울산광역시 북구 동계로 51-3(호계동)	2016-10-20	동대산 인근에 위치한 구획단지내 지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1-03-22	
2	울산광역시 북구 종산동 1286-2	울산광역시 북구 종산2길 2(종산동)	2016-10-20	법정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3-12-30	
3	울산광역시 북구 종산동 1286-14	울산광역시 북구 종산서로 2(종산동)	2016-10-20	종산지구 서쪽에 위치한 도로라는 의미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3-12-30	
4	울산광역시 북구 진곡동 267-7	울산광역시 북구 진곡남로 130(진곡동)	2016-10-20	주민 누구나 알수있는 지명을 사용하였으며, 진곡동 전체지역의 남쪽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8-03-11	